

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(차량연장 신청 및 차량초과 운행 과징금 관련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렌터카연17-0219호(2017.12.19.)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□ 질의요지

- ① 차량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(공휴일 포함)인 경우, 그 다음 월요일(그 다음 날)에 사업자가 임시검사를 수검하고 합격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차량연장을 신청한 경우 차량연장이 가능한지 여부
- ② 차량이 초과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행하지는 아니하고 차고지에 주차해두었다가 말소등록 한 경우,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

□ 답변내용

-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4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을 넘겨 운행할 수 없으며,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- 이와 관련하여,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 제1호·제2호에 따라 차량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, 차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 차량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,
 - 동법 시행령 제 40조 제1항과 관련한 [별표2]의 비고란 제2호 가목은 차량 연장을 위해서는 차량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량 기간에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한편, 법제처 법령해석례(08-0222, 2018.10.2.)에서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임시검사를 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라 차량을

연장하는 자는 시·도지사이므로 차량의 임시검사와 차령연장의 행위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, 차령연장을 위해 차량의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실만으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,

-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, 시·도지사가 해당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시행령 [별표1](※현재, 별표2)의 연장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비로소 차령이 연장되는 것이라 해석한 것을 참고할 때,
-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령연장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.

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령을 초과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5조 제1항 제36호 및 동법 시행령 [별표3](제43조 제1항 관련)에 따라 90일의 사업일부정지(1회 위반)·감차명령(2회 위반) 처분 또는 동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[별표5](제46조 제1항 관련)에 따라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위의 규정은 단순히 대여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,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가 운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 김연우 행정사무관 김선욱 과장 전결 2018. 1. 30. 신윤근

협조자

시행 신교통개발과-247 (2018. 1. 30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821 팩스번호 044-201-5579 / dusdn89@molit.go.kr / 비공개(5)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